

LPG 충전업 관리 질의·회신

산업자원부
LPG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산자부가 회신한 내용을 게재한다

A & Q

Q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상 '안전관리자 신고대상은 안전관리 책임자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LPG충전소에서 안전관리자선임은 최소 안전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을 선임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위에서 말한 '신고대상은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는 말은 순수 안전관리책임자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관할구청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만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원은 자체 선임으로 가능한 것인지 명확한 유권해석 요망.<2006. 2.17>

A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8-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안전관리책임자만 해당되며, 안전관리원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2006. 2. 22 에너지안전과>

Q 장애인이 한집에 여러 명 있을 경우 각 장애자 별로 LPG차량을 2대 등록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 LPG차량은 장애인 수에 관계없이 한세대에 1대만 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어느 규정에 의한 것인지 답변요망.<2006. 2. 22>

A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 2 제5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에 한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 법령에서 장애인에게 LPG 승용자동차를 소유·사용토록 한 것은 당해 장애인의 이동상 편의를 위한 목적에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보호자의 자격으로 이미 LPG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가 또 다른 장애인(아들)과 LPG 승용자동차를 공동 등록함은 동 법령상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2006. 2. 23 가스산업과>

Q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위와 공동명의로 엘피지 자동차를 등록하였으나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위가 LPG자동차를 사용 할 수 있는지.

- 참고 장애인 지분을 사위가 상속 받으려 했지만 사위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 되어 직계존비속 1명과 같이 등록될 수 밖에 없다고 함. 즉 직계비속 흥길동 외 1명(사위)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함.

장애인 지분을 사위가 전부 인수하여 사위명으로 엘피지 자동차를 단독으로 등록 할 경우 LPG연료 자동차를 사용 가능하지. 불가능하다면 장애인 직계비속 1명 명의로 상속을 받고 사위지분까지 증여를 받아서 장애인 직계비속 1명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 할 경우 LPG연료 사용이 가능한지 <2006. 1. 5>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2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준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는 LPG 승용자동차를 소유.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 받은 보호자가 계속하여 당해 LPG 승용자동차를 소유 ·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LPG 승용자동차를 소유 · 사용하다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에 당해 차량을 소유. 사용하던 보호자(사위) 또는 상속받은 보호자(딸)의 경우에는 단독, 혹은 공동명의로 구조변경의 절차 없이 당해 자동차에 한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기존의 보호자(사위) 단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분(장애인)에 대한 상속자들의 지분포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상속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2006. 1. 6 가스산업과>

Q 장애인 lpg차량 등록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아하고 있으면 공동명의가 가능하나, 공동명의를 하고 있다가 세대분리만 하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있는 상태인데 공동명의 해지를 안할 경우) 처벌을 받는지. <2006. 5. 1>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 ·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는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요건이 상실된 보호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매각 또는 구조변경)토록 하고 있음.

동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 <2006. 5. 1 가스산업과>

Q 2002년5월 제작한 4.9톤*2기 LPG탱크 재검사에 대한질의로, 2004년 7월 탱크이동으로 재검사 완료 2006년2월 탱크이동(10m) 재검사 완료 2006년 5~6월경 탱크이동(30m)이동할 예정임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법시행규칙 별표22의 규정에 따라 신규검사 후 5년마다 재검사를 해야 하므로 2007년5월에 재검사를 해야 함으로 신규검사 후 3번의 이동으로 3번의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내년도 정기 재검사를 1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지.<2006. 5. 10>

A “2002년 5월 제작한 4.9톤 LPG 저장탱크를 2006년 2월, 2006년 5-6월에 이동시 차기 재검사 년월”에 대한 문의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탱크는 신규검사 후 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 때에도 재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주기 경과에 따른 재검사 방법과 저장탱크의 이동에 따른 재검사 방법이 동일하므로, 동 탱크의 차기 재검사 시기는 최종 재검사(이동에 의한 재검사를 포함한다) 년월을 기준으로 5년 후 재검사를 받으면 될 것임.

<2006. 5. 17 에너지안전과>